

■ 국회인사규칙 [별표 4의3]<신설 1994.7.20>

겸임예정직급기준표

		1급·2급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연구직렬 공무원		연구관	연구관	연구관	연구관				
교육 공 무 원	대학·교육대 학·전문대학 (사 립 학 교 및 동부설연 구소의 교원 포함)	교수	교수· 부교수	부교수 · 조교수	조교수· 전임강사 (2년이상)	전임 강사			
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· 단체		이사 (3년이상)	이사	부장	과장 (차장)	계장 (대리)	평사원 (3년이상)	평사원	평사원